

제286회 정례회
성 북 구 의 회

의안
번호 제422호

**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(안) 검토보고서**

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(안)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전문위원 이 병 곤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422 호
-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제 출 일 : 2021. 11. 10.
- 회 부 일 : 2021. 11. 17.

2. 제안이유

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(안 제1조)

-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

나. 소셜미디어¹⁾ 등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다. 소셜미디어의 활용²⁾ (안 제3조)

-
- 1)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, 블로그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인터넷방송 등의 매체
 - 2) 1.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2. 교육·문화·예술·관광·체육·건강·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
3.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
4. 구민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

- 라. 게시물의 유지·관리 (안 제4조)
- 마. 소셜미디어 활용사업³⁾ (안 제5조)
- 바. 소셜미디어 서포터스⁴⁾의 운영 (안 제6조)
- 사. 개인정보 보호 (안 제7조)
- 아. 시행규칙 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21. 9. 30. ~ 2021. 10. 20.
- 마. 각종 영향평가 결과

구분	검토의견	반영 내용
성별·인권영향평가	차별적 요소와 나이, 언어, 장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제안	제4조 (게시물의 유지·관리) 제2항 (삭제·차단) 제3호 3. 성별, 연령,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차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(신설)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제정안은 성북구의 정책이나 행사 등을 홍보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, 게시물을 유지·관리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의 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게시물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등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
- 3) 1.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
2. 문화·예술·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
3.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(공모전 및 이벤트)가 필요한 경우
 - 4)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에 따라 위촉한 사이버 기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포터스로 보며,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